탄 원 서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 | 특별사면 검토 요청 | 시민 탄원

수신	법무부장관 귀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참고)
대상자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634 / 서울고법 2026노1788
확정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6. 11. 5. 확정)
탄원인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저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이 탄원은 확정판결을 없었던 일로 여기거나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유죄판결과 형의 확정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사면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구제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김신 대상자는 2025년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으며, 11월 5일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무죄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의 법적 절차에 맞춰 이 탄원을 드립니다.

2. 사건과 책임을 분리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법하게 방해했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사면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경호처 지휘부 전체의 행동과 김신 대상자 개인의 구체적인 지시·실행행위를 구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가족경호 업무의 책임 범위, 상급자의 지시가 전달된 경로, 그 지시를 독자적으로 확대하거나 주도했는지, 현장 인력 배치나 장벽·시설물 운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은 판결문과 관련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검토해 주십시오. 공동 피고인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역할의 경중이 동일하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반대로 지휘체계 안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행동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형 확정 이후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됐다는 사실은 법원이 당장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론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사면은 재범 위험, 형의 선고 이후 생활 태도, 직업적·사회적 불이익, 공동체 복귀 노력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할 예외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이러한 개별 사정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반성문, 사회활동 내역, 징계·경력 자료, 가족관계 및 기타 정상자료가 실제로 제출되는 경우 그 내용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검증한 뒤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사면법에 기초한 구체적인 요청

사면법 제3조와 제5조는 특별사면 및 복권의 대상과 효과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7조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형의 변경 또는 집행유예기간 단축의 가능성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 조치가 가능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김신 대상자에 관하여 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② 법률상 가능한 범위의 집행유예기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복권은 형 선고 때문에 법령상 자격이 실제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실 및 사면법 제6조의 제한 등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특별사면과 복권이 자동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5. 공정하고 절제된 사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사면권은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절차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더욱 엄격한 요건과 충분한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인물에 대한 호오가 아니라, 확정판결의 내용·실제 역할·형의 종류·장래의 사회복귀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서로 다르더라도, 법률이 예정한 사면제도를 통해 개인별 사정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일까지 배제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과 재발방지 등 관련 정상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결어

저는 법의 엄정함과 형사사법 이후 사회적 복귀의 가능성이 함께 존중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신 대상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사면법 제7조에 따른 특별사면이나 집행유예기간 단축 등 법률이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요청은 법원에 대한 무죄 요구가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나 특혜를 전제로 한 주장도 아닙니다. 부디 자료와 절차에 충실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